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3. 6. .

법제처 심사 전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송사가 차주에게 제공하는 화물위탁증의 거래이력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차주 처우 개선을 위해 화물차 휴게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사가 차주에게 발급하는 화물위탁증에 기존에는 ‘운임’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주의 운송사 지급운임 및 운송사의 차주 지급운임을 표기토록 구체화하고 또한 화물위탁 이력을 명시토록 하여 차주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1조의 4제1항제7호·제7의2호·제7의3호)

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시 주차장, 휴게실 등 6개 시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여 휴게소 설치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이를 완화하여 주차장을 구비하고 나머지 시설 중 2개 시설만 구비하면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하고자 함(안 별표6의2 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화주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7의2.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위·수탁차주 또는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7의3.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의 위탁 이력

별표 6의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차장을 구비하고, 추가적으로 휴게실, 사위실, 식당, 정비소, 주유소(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2종 이상을 구비할 것
--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화물위탁증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3항 본문(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략) <u>7. 운임</u> <u><신 설></u> <u><신 설></u> 8. (생략) ② ~ ⑤ (생략)	제21조의4(화물위탁증의 발급) ①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화주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u> <u>7의2.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위·수탁차주 또는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u> <u>7의3.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의 위탁 이력</u>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